

# 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

## 농지의 표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m <sup>2</sup> )	작물명
시 : 군	읍 : 면	리				
익산시						
계			필지			

제1조 위 농지에 대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계약함.

제2조 위 농지를 임차함에 있어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임차료를 지불하기로 함.

임차료	임차료 지급방법	임차료 지급시기
-----	-------------	-------------

제3조 농지의 명도는 20 년 월 일로 함.

제2조 임대차 기간은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로 정함.

제4조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위 농지에 관한 공과금등 비용의 부담을 다음과 같이 정함

임대인부담비용	
임차인부담비용	

제5조 본 계약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당사자의 일방이 이를 해지할 수 없음.

다만, 다음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임대인이 해지 할수 있는 경우

임차인이 해지 할수 있는 경우

## <특약사항>

위 계약조건은 틀림없이 지키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각 1통씩 갖기로 함.

20 년 월 일

임대인 (토지소유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 번호	-	전화번호
임차인 (경작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 번호	-	전화번호

※ 본 계약서에서 임차료를 무상으로 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은 각각 사용대인, 사용차인으로 본다.

♣ 1. 원칙적으로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된 농지만 임대(사용대)차 가능합니다.

즉, 1996. 1.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한 경우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처분대상이 됨, 단, 예외적으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중 (가)상속받은 농지(1헥타르)이내, (나)60세 이상인자가 5년이 상 경작한 농지 (다)3개월이상의 질병, (라)징집,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 할 경우는 임대차가 가능함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경이 어려운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수탁하여 소유하는 것은 허용함